

보도자료

2018. 1. 8.(월)



서울회생법원

담당부서

서울회생법원 공보관실

담당자

서울회생법원 공보관
(☎ 02-530-2044)

‘서울회생법원’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에 대하여도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단축 허용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업무지침 제정 및 시행-

1 개요

-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2018. 1. 8.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시행일 2018. 6. 13., 이하 ‘개정법률’이라고만 함)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기로 함(현재에는 변제기간 5년이 원칙임)
 - 개인회생제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변제기간(현재는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
-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업무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17. 9. 1. 제정)의 하위규정인 ‘업무지침’의 형식으로 시행함
 - 실무준칙 등의 제정 및 개정절차에 관한 내규(서울회생법원 내규 제34호) 제2조, 제3조: 실무준칙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업무지침은 서울회생법원 ‘전체판사회의’의 의결 내지 서면결의로 제·개정함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

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 2018. 1. 8. 시행): 상세 내용은 아래 ②항 참조

○ 개정법률의 내용

- 개인회생의 원칙적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현행법률	개정법률(시행일 2018. 6. 13.)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u>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u>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u>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u>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 개정법률 시행 전의 경과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는 이유

- ① (2, 3년차의 높은 폐지율) 개인회생사건은 변제개시일로부터 2년~3년차에 폐지율이 가장 높음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2013 접수	서울	2.3	11.5	8.2	3.7	0.6	26.5
	전국	2.4	9.8	7.6	6.1	0.9	26.9
2014 접수	서울		2.4	9.7	6.5	0.9	19.5
	전국		1.9	9.2	8.5	1.5	21.3
2015 접수	서울			2.2	8.5	1.9	12.7
	전국				10.3	2.5	15.0
2016 접수	서울				2.0	1.8	3.8
	전국				2.7	2.8	5.5

- ② (현행법상 허용가능성) 그런데 현행법률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은 허용됨

- 현행법률 제611조(변제계획안의 내용)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① 채무자는 법 제611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5.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③ 채무자가 제2항 제1 내지 5호의 규정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법 제614조의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다.

- ③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사회적 요구) 이러한 이유로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논의와 사회적 요구는 끊임없이 있어 왔음
- ④ (개정법률의 입법취지 존중)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는 장기간의 변제기간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 특히 이와 같은 반성적 고려에 따른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는 인가 후 사건에 있어서 변제계획 변경사유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9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된 변경계획 변경안의 제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 ⑤ (변제수행 의지 고취) ①에서 본 바와 같이 2, 3년차의 높은 폐지율을 고려할 때, 3년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경우 채무자들의 변제수행 의지를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② 업무지침의 내용

○ 인가 전 사건

- 3대 원칙(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총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제출 내지 수정제출을 허용함

○ 인가 후 사건

-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수행한 경우 인가 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총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나, 이른바 3대 원칙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것이 명백해야 함
- 이 경우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에 앞서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 있음 ☞ 기간단축의 특례를 적용하되,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NEW START의 기회를 제공) 및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합리적 경제관 형성의 기회 부여하기 위함임
- 다만 청산가치 재산정의 필요가 있거나 변제계획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는 특별심사 사건으로 규정함

○ 업무지침: 별지 참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

이 업무지침은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6. 13. 이전까지 접수된 개인회생사건 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개시결정 전 사건

가. 변제기간이 3년으로 작성된 사건

변제기간이 3년으로 작성된 변제계획안은 아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① 청산가치 보장: 채무자가 3년간 변제하는 총변제예정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초과하여야 함(청산가치의 보장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음)
- ② 가용소득 전부투입: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함
- ③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위 총금액의 5/100를 곱한 금액
 -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위 총금액의 3/100을 곱한 금액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 ④ 기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

나. 변제기간이 5년으로 작성된 사건

1) 채무자의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채무자는 종전 제출된 변제계획안과 달리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위 변제계획안은 1.의 가.항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처리절차

- 가)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회생위원은 사건기록 및 수정 변제계획안 등을 검토한 후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고, 판사는 지체 없이 그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나) 채무자가 2018. 2. 28.까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종전 변제계획안을 검토하여 그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다) 채무자가 2018. 3. 1. 이후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변제계획안을 검토하여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2.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전 사건

가. 채무자의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채무자는 종전 제출된 변제계획안과 달리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위 변제계획안은 1.의 가.항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나. 처리절차

1) 채권자집회기일 이전 채무자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 가) 채권자집회기일 이전에 수정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경우: 기존 채권자집회기일을 진행함
- 나) 채권자집회기일 이전에 수정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집회기일을 변경하고, 변경된 채권자집회기일까지 수정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함

2) 채권자집회기일 이전 채무자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 판사는 채권자집회기일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실'을 안내하고 집회기일을 속행함
- 나) 채무자가 속행된 집회기일 전까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판사는 속행된 채권자집회기일을 진행한 후 종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함

3. 인가결정 후 사건

가. 이 부분 업무지침은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 변경안(이하 '기간단축변경안'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채무자가 가용소득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함)

나. 기간단축변경안의 제출

1)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의 경우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수행 중인 자로 변경신청 당시 미납금액이 없는 채무자는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위 기간단축변경안은 아래 작성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36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의 경우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는 36개월 이상 변제를 수행한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음

다. 기간단축변경안의 작성기준

1) 변제기간

- ① 변제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익월)의 변제기일로 변경
- ② 변제개시일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 ③ 청산가치보장 등의 사유로 변제 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익월) 이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

2) 청산가치의 보장

기간단축변경안에 따른 총변제예정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여야 함

3) 가용소득 전부투입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가 기간단축변경안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함

4) 최소 변제 금액 이상의 변제

변제기간을 단축한 경우라도 최소변제금액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져야 함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위 총금액의 5/100를 곱한 금액,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위 총금액의 3/100을 곱한 금액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라. 처리절차

- 1)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기간단축변경안이 위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부를 조사한 후, 판사에게 그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2) 기간단축변경안이 위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 판사는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함
- 3) 판사는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지체 없이 인가여부 및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함
- 4) 판사는 위 3)에 따른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에 앞서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 있음

마. 특별심사 사건

- 1)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이 접수된 사건 중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가) 채권자의 이의내용, 지역별 특성 및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 형태 등에 따라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나) 기간단축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 2) 회생위원은 추가조사를 위하여 채무자 면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판사에게 집회기일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부 칙

이 업무지침은 2018. 1. 8.부터 시행한다.

현 진행단계		변제계획안 작성·수정·변경 방법	
		제출 시기	작성 방법
인가 전 채무자	신규접수예정 채무자	접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최장 5년까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음)
	개시결정 전 채무자	2018. 2. 28. 까지	
	개시결정 후 채무자	속행된 집회기일까지	
인가 후 채무자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	2018. 1. 8. 이후 (신청일까지 미납한 변제금이 없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제기간: 변제 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익월)의 변제기일로 변경 • 예시 2014. 12. 20.부터 2019. 11. 20.까지 60개월간 변제하는 채무자가 2018. 1. 18. 변경신청을 한 경우 → 기간단축변경안의 변제기간을 『2014. 12. 20.부터 2018. 2. 20.까지 39개월간』 으로 변경
	36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	36개월 이상 변제를 한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2015. 12. 20.부터 2021. 11. 20.까지 60개월간 변제하는 채무자의 경우 → 36회차에 해당하는 2018. 11. 20. 변제금을 납부한 이후 변경신청이 가능하고, 작성방법은 위와 같음
	특별심사 사건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기간단축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